

대체교사go, 어린이집지원 보육교사gogogo.

대체교사go, 보육교사gogogo.

대체교사go, 어린이집지원
대체교사지원사업
보육교사gogogo.



대체교사go, 어린이집지원
대체교사지원사업
보육교사gogogo.

CONTENTS

I 육아종합지원센터 05

-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내용

II 대체교사 지원사업 12

-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 ▶대체교사 관리 시스템 사용방법
- ▶대체교사 교육 안내
- ▶대체교사의 업무이해
 - 대체교사 어린이집 근무 안내
 - 대체교사의 자세
 - 대체교사의 역할

III 아동중심·아동권리 실현으로 아동이 행복한나라 23

- ▶아동권리 아동복지법
- ▶UN아동권리협약이 담고 있는 4가지 기본권
- ▶아동학대
- ▶아동학대 발생 요인
- ▶아동학대 신고

IV 사고사례중심 응급처치 및 보육 지도방안 31

넘어짐 | 굶힘·배임 | 할렘·꼬집음 | 당김 | 끼임
미끄러짐 | 물림(사람) | 이물질 삼킴(삼입)

V 대체교사 현장 업무 이야기 40

열 명의 이야기

대체교사지원사업



“대체교사 지원을 진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I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go, 보육교사gogogo.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Support Center For Childcare)의 정의

-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보육교직원· 부모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육아지원 기관(영유아보육법 제7조)

설립목적

-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 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 양육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함
 - 보육컨설팅, 교직원 상담 및 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 기능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등 가정양육 지원 기능의 지역 내 One-stop육아지원서비스 제공함

설치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2조

영유아보육법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영유아에게제26조의2에따른시간제보육서비스를제공하거나보육에 관한정보의수집·제공및상담을위하여보건복지부장관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한다)및시장·군수·구청장은지방육아종합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한다.이경우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영아·장애아보육등에관한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시행령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중앙육아종합 지원센터(이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운영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자료실, 상담실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4.2.11.>

*출처: 2020년 보육사업안내

지방자치단체 조례

**시(~구, ~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 [**시(~구, ~군) 조례 제 ****호, 20**.*.*, 일부개정]

제3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11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은 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②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③ 센터를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수탁자가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음

제12조(구성 및 기능)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 전문요원 등을 두어야 한다.

② 센터의 장 및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는 영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다.

③ 센터의 기능은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3조(재정) ***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이하 생략 -----

※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지역마다 상이하므로, 각 지역 조례 참조

설치자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함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함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 가능함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비용은 상호협약에 따라 정함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각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1.의1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教具)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 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

• 중앙센터

시도·시군구센터업무전반에 대한 관리·지원·지방센터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그 밖의 정부의 보육사업 시행을 지원함

• 시도 및 시군구센터

관할 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앙센터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참여하여 질적인 개선을 도모함

*출처: 2020년 보육사업안내

I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go, 보육교사gogogo.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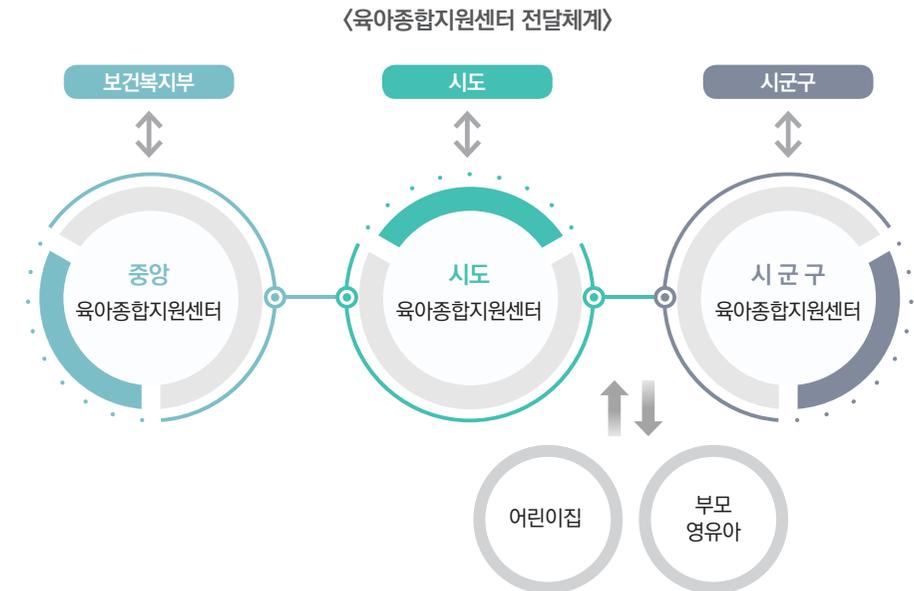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내용

구분	사업
어린이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보육과정 교육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 어린이집 설치·운영·이용 등에 관한 상담 ▶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 대체교사 지원 및 관리 ▶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보수교육 실시의 위탁) ▶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학대예방 교육 및 상담 등 ▶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영양·안전 교육 ▶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지원 ▶ 보육교직원 구인·구직 정보 제공 ▶ 어린이집 이용 부모에 대한 교육 ▶ 열린어린이집 운영 지원 ▶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를 위한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정양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교육 및 상담 ▶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운영 ▶ 육아콘텐츠 개발 및 지원 ▶ 영유아 체험프로그램 및 놀이공간 제공 ▶ 도서·장난감 등 제공 또는 대여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 부모소모임 등 교류 공간 제공 ▶ 영유아 발달에 관한 검사 ▶ 그 밖에 가정양육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기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 보육프로그램 및 양육 콘텐츠 제공 ▶ 정보지, 자료집 발간 등 보육 및 양육관련 홍보 ▶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유관기관과 연계사업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용 관련 상담

※ 보건복지부, 「2020 보육사업안내」

※ 사업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달체계



비전 및 전략

• 보건복지부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비전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	
목표 및 전략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지원체계 개편
	1. 국공립 이용률 40%로 확대 2. 국공립 운영의 공공성 강화 3.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4.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	1.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체계 개선 2.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 3. 보육과정 개편
	보육서비스 품질향상	부모 양육지원 확대
	1.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2.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3.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4. 상시적 품질관리 강화	1.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 지원 2.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3. 취약보육 지원 개선
실행 기반	▶ 지원기관 기능 개편 ▶ 민·관 협업 확대 ▶ 전산시스템 개편	

*출처: 2020년 보육사업안내

I 육아종합지원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 미션 및 비전, 전략과제



미션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육아실현



비전

영유아의 미래를 위해 신뢰받는
어린이집과 행복한 가정을 실현하는
포괄적 육아지원 전문기관



발전목표

건강한 영유아,
신뢰받는 어린이집,
행복한 가정, 함께하는 지역사회

전략과제

- ▶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 및 도서대여 제공
- ▶ 신나게 놀이하고 경험하는 체험실 제공
- ▶ 영유아 놀이 프로그램 제공

- ▶ 어린이집 설치부터 운영 전반에 관한 컨설팅 제공으로 전문성 향상
- ▶ 보육교직원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전문 역량 강화
- ▶ 보육교사 업무 공백의 최소화를 통한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지원

- ▶ 부모교육 및 전문 상담을 통한 양육지원
- ▶ 육아나눔터 제공을 통한 부모 간 소통증진과 시간제 보육지원
- ▶ 영유아 부모를 위한 콘텐츠 제공

- ▶ 국가, 지역 사회와 전국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포괄적 육아 전문 지원
- ▶ 중앙,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연계를 통한 육아지원 전달체계 강화
- ▶ 지역사회 요구와 특수성을 반영한 육아지원 강화

*출처: 2020년 보육사업안내

대체교사지원사업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소개 합니다”

II 대체교사 지원사업

대체교사go, 보육교사gogogo.

•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지원내용

- 영유아보육법제 17조제4항에 따라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육아종합지원센터
- 시·도(시·군·구), 어린이집에 채용된 대체 교사를 지원
 - 어린이집별로 1명씩 우선 지원하는 등 특정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에게 대체교사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시·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 토요일은 미지원,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
 - ※ 대체교사는 연가 사용이나 보수교육에 참석한 보육교사(교사겸직원장포함)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업무를 대행
 -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지원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해야 함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 교사겸직원장
- 연장보육 전담교사
- 야간연장 보육교사 ※ 대표자,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 신청인원이 지원 가능한 대체교사 인원보다 많을 시, 소규모(보육교사 5인 이하) 어린이집의 장기근속 보육교사, 보육교사, 교사겸직원장 순으로 우선 지원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 보수교육(주중1~5일, 최대10일)참석, 본인 결혼 등 연가(주중1~10일, 최대10일), 건강검진, 예비군 훈련, 긴급사유(아동학대로 인한 긴급지원, 모성보호, 가족상, 본인 질병·사고 등)발생 시 지원
- 보육교사 대체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일수 다양화
 - 지원 사유에 따라 주중 1~5일(최대 10일), 필요 시 증빙자료 제출
- 지원사유에 해당하는 신청이 적어 대체교사 유휴 인력이 있는 경우, 센터별 기준을 마련하여 어린이집에 추가로 대체교사 지원
 - ※ (예시) 신학기 등 어린이집 적응기간 교사지원(유아반 인원이 많은 어린이집 우선 지원), 장애 영유아·다문화 영유아 등 취약보육 지원(취약 보육 대상 인원이 많은 어린이집 우선 지원), 평가 준비 어린이집 지원 등
 - 단, 추가 지원 당일에 긴급사유 요청이 있을 시, 긴급사유 우선 지원
- 교사겸직원장의 경우, 연간 최대 10일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

구분	우선 순위	지원 사유	지원 일수	비고	
상시	1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5일 최대 10일	사전 신청 매월 1일~10일	
	2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일		최대 10일
		연가	1~10일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일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수시 신청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 10일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보육교사 연 1회 건강검진 실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방식

-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1개월 단위로 전월에 사전 신청하되, 긴급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유선·Fax 등을 통해 수시 신청 가능
 - 보육교사가 직접 대체교사 지원을 신청할 경우 보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과 사전 협의 필요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신청 어린이집 중 우선순위에 의해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통보, 지원 예정일에 대체교사 지원

*출처: 2020년 보육사업안내

II 대체교사 지원사업

대체교사go, 보육교사gogogo.

- (지원단가) 월 2,243천원, '20년 1월부터 적용

구분	세부 지원 내용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교사 및 관리자 급여: 월 1,802천원/인(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교사 관리자는 1명을 둘 수 있으며, 대체교사 30명당 관리자 1명을 추가하여 둘 수 있음 ▶ 기본교통비(관리자 제외): 월 100천원/인 ▶ 관리자 기본수당: 월 300천원/인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법정비율 준수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연도 대체교사 사업예산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교사 사업 관리·운영(인사·노무 관리 자문 비용 포함)과 관련된 사항에 집행 - 별도 명시가 없는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하여 집행 ▶ 운영비 예산 범위 내에서 관리자 수당 추가 지급 가능 ▶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 지원, 원거리 지원, 상시적인 근무지 변동 등의 경우 대체교사 사업 예산의 추가 5% 이내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적정 여비 지급 가능(다만, 기본교통비 10만원을 초과하는 교통비는 실비 지급)

- (자격)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 ※ 장애아 보육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 소지자를 우선 채용
 - ※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대체교사 관리자는 보육교사 자격 미소지자 채용 가능
 - 단, 자격 미소지자의 대체교사 관리자 근무경력은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보육업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사업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시·군·구), 어린이집에서는 연가 수요, 보수교육 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체교사의 채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채용된 대체교사의 교육, 경력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실시
 - 육아종합지원센터는「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에 따라,기간제 대체교사를 무기계약직 심의위원회 구성·심의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음
 - 시·도는 대체교사 배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간 보수교육 일정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공유
 - 시·도(시·군·구)는 관할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 인력풀을 자체적으로 관리·운영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음
 - 시·도(시·군·구)는 관할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 인력풀 관리·운영을 위한 인력을 별도로 채용하여 대체교사 관리자 인건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시·도(시·군·구)는 관할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의 교육을 위하여 대체교사 예산에서 보수교육(직무교육) 수준의 교육비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음
 - 시·군·구에서는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 및 지자체와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 인력풀에 포함된 인력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실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

유의사항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에 미배치 되는 대체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휴인력 지원 등 적극 활용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 직접 채용된 대체교사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대체교사는 담임교사의 법정연가 사용 및 보수교육 참석 등으로 인한 부재시 보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에게 지원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됨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

가. 지원내용

- ▶ 어린이집 담임교사(교사겸직원장)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를 지원

나. 지원조건(대상, 사유, 일수 등)

- ▶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와 동일

다. 지원내용

- ▶ 지원단가: 일 8만2천원(8시간 기준)
 -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 ▶ 지원기준
 - 실제 근무일(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지원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시 4시간 근무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 가능
 -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지급

라. 지원절차

- ▶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 및 임면보고
 - 다만, 지자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체교사 인력풀에 포함된 대체교사일 경우 임면보고 관련 구비 서류 제출 불요
- ▶ 근무 후 어린이집에서 급여 선 지급
- ▶ 매월 말까지 증빙서류 첨부하여 어린이집에서 시·군·구로 보조금 신청
- ▶ 매월 말까지 증빙서류 확인 후 어린이집 통장으로 보조금 입금
 - * 증빙서류: 연가, 보수교육 등 확인서류(근무상황부, 보수교육 이수증 등), 급여지급명세서 등

마. 유의사항

- ▶ 지원조건 부적합 시 보조금 지급 불가, 과오지급된 경우 환수
- ▶ 특정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에게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
- ▶ 별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과 동일

*출처: 2020년 보육사업안내

II 대체교사 지원사업

• 대체교사 시스템 사용방법

- 어린이집 배치 내역, 【서식5】 대체교사 업무에 관한 어린이집 안내서 확인
- 어린이집 지원 후 업무일지 및 평가지 작성

☞ 경기도 소속 대체교사

경기도지역 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는 경기남부와 경기북부를 기준으로 경기도센터와 경기도북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대체교사 근무현황

- ① 로그인 후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대체교사 근무현황」 클릭
- ② 육아종합지원센터(행정지원시스템신청/배치관리)에서 대체교사를 어린이집으로 배치한 정보가 목록에 나타남
- ③ 배치된 「어린이집명」클릭하면 어린이집 지도를 볼 수 있음
- ④ 목록에서「업무일지 N」을 클릭하면 업무일지를 작성할 수 있는 '팝업' 창으로 보임
- ⑤ 업무일지를 입력 후 대체교사 「업무평가지N」을 클릭하면 업무평가지를 작성할 수 있는 '팝업' 창으로 보임
- ⑥ 「어린이집 안내서」를 클릭하면 어린이집에서 작성한 안내서가 '팝업' 창으로 보임
- ⑦ 「파일첨부」를 클릭하면 어린이집에서 첨부한 자료를 확인 및 저장 할 수 있음

대체교사 로그인

- ① 각 해당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 우측 상단의 로그인
- ② 로그인 페이지에서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로그인 클릭하면 아래의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인증서가 없을 경우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하시면 홈페이지내 영유아보육관련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클릭!
어린이집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업무관리시스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II 대체교사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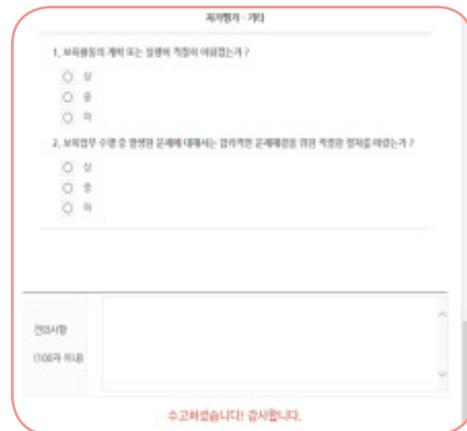
대체교사go, 보육교사gogogo.

업무일지와 업무평가지 작성

- ① 업무일지 작성·수정
- ② 보육교사가 신청한 기간별로 근무시간과 근무내용 필수 입력



③ 업무평가지 작성·수정



• 대체교사 교육 안내

대체교사 교육 운영(안)

구분	내용	시기
신입 및 직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종합지원센터 소개 ▶ 대체교사 업무 이해 ▶ 어린이집 소개 ▶ 보육과정 소개 ▶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필) ▶ 장애영유아 이해 ▶ 보육교사 안전교육 ▶ 건강 및 응급처치 교육 ▶ 2019년 개정 누리과정 교사 연수[원격] 	입사 시 연1회
법정 의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개인정보보호교육(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내 대한 교육(아동복지법 제26조)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고용 촉진법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연1회 필수
센터교육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상호작용 교수법 ▶ 의사소통과 부모상담 ▶ 어린이집 평가제 ▶ 기타(센터 연계교육) 	필요 시

*출처: 업무관리시스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출처: 업무관리시스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II 대체교사 지원사업

대체교사go, 보육교사gogogo.

• 대체교사의 업무 이해

대체교사 어린이집 근무안내

연락시기	알아야할 사항	근무 전 서류와 정보	근무 완료 후
배치결과 후 근무시작 일주일 전에 어린이집에 유선으로 연락 한다.	어린이집 연락처 (경기도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대체교사 근무현황 확인)	지원된 반 계획안과 일지 등 확인한다. ※업무인수 인계서 반드시 확인	대체교사 근무현황에서 업무일지와 평가지 작성을 작성한다.
	어린이집 위치 및 담당반(연령)을 확인한다.(근무현황 어린이집 안내문 확인)	인수인계사항 근무시작 전 반드시 확인한다. (보육일지, 등·하원시간, 투약, 기타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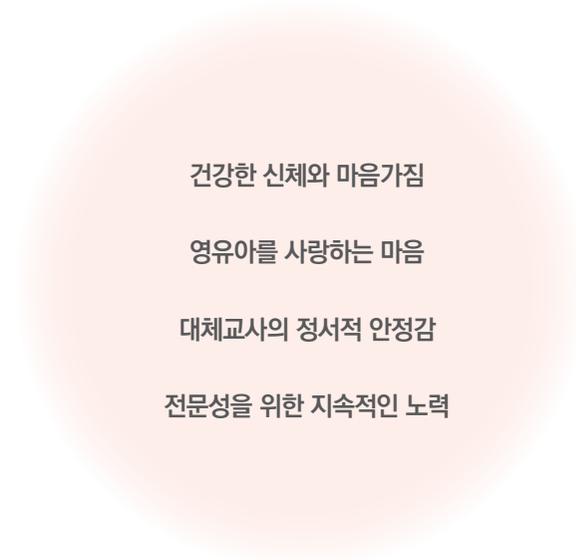
대체교사의 근무 시작 당일 기본생활

- ① 인사: 출퇴근 시 교직원상호간에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하며 어린이집 부모 및 어린이집 방문객(등·하원시)에게 인사한다.
- ② 수업준비: 당일과 다음날의 하루일과표, 보육일지, 교실 상황을 확인 후 퇴근한다.
- ③ 보육실 일일점검표: 담당 보육실의 일일점검표 매일 체크한다.(어린이집에 비치된 관련문서 확인)
- ④ 안전: 영·유아 및 교실 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⑤ 청소: 담당교실(화장실)과 업무분장 구역이 있는 경우(유희실, 복도) 청소한다.
- ⑥ 어린이집 비품사용: 담당자에게 보고한 뒤 사용하고 반드시 반납한다.
- ⑦ 보육일지는 매일 원장(혹은 지정된 교사)에게 제출하고 피드백 받는다.
- ⑧ 자신의 업무분장 내용, 실행 일정을 확실히 알고 누락 없이 진행한다.
- ⑨ 영유아와 함께 지내는 시간 및 교직원간에 상호 존칭어를 사용 등 언행과 복장을 단정히 한다.
(앞치마, 덧신 착용/귀걸이, 목걸이 등 소지품 주의)
- ⑩ 아동사진촬영 이외에 휴대폰 사용금지과 어린이집 인수인계 내용으로 업무 수행한다.

대체교사의 근무 시작 당일 기본생활

- ① 대체교사는 연가사용이나 보수교육 참여로 보육공백기에 있는 어린이집 담임교사 업무를 그대로 진행한다.
- ② 대체교사는 업무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③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외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대체교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센터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대체교사의 자세



대체교사의 역할

- ① 건전한 정신과 긍정적인 언어사용
- ② 성실한 근무태도
- ③ 책임감을 갖고 타 종사자들과 화합
- ④ 영유아의 이름을 최대한 빨리 숙지하고 부르기
- ⑤ 영유아에 대한 편견금지
- ⑥ 영유아의 말과 행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감정조절
- ⑦ 영유아 및 부모에게 접근 시 대체교사의 역할이 해당 시설의 교사의 역할과는 다름을 인식
- ⑧ 원장님을 통해 지원하게 된 반의 보육업무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시설의 기본 사항을 숙지하고 그에 따라 행동
- ⑨ 시설을 개인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하지 않음
- ⑩ 비밀 누설 금지

*출처: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지원사업



잊지 마세요!
“아이들 모두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III 아동 중심·아동권리 실현으로 아동이 행복한 나라

• 아동권리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이념)

-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UN아동권리협약

어린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단계에 있어 어른과는 달리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것들을 모아 놓은 것이 유엔아동권리협약입니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지구촌 모든 어린이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입니다.

아동권리 협약 4가지 기본권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입니다.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입니다. 교육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 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여기에 속합니다.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말하고 존중 받을 권리입니다.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의견을 말할 권리,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 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이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학대 유형

신체학대 (Physical Abuse)/(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

내용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핥기는 행위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강하게 흔들, 신체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잡음, 아동 던짐, 거꾸로 매달, 물에 빠트림 등)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신체적 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굽힌 상처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담배 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자국, 회음부에 있는 화상자국, 알고 있는 물체모양(다리미 등)의 화상자국, 회복속도가 다양한 화상자국 입, 입술, 치은, 눈, 외음부 상처 ▶ 굽히거나 물린 자국에 의한 상처 ▶ 손목이나 발목에 굽힌 상처, 영유아에게 발견된 붉게 굽힌 상처 ▶ 성인에 의해 물린 상처 ▶ 겨드랑이,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대뇌 출혈, 망막출혈, 양쪽 안구 손상, 머리카락이 뜯겨나간 두피 혈종 등을 동반한 복잡한 두부 손상 ▶ 고막 천공이나 귓볼이 찢겨진 상처와 같은 귀 손상 골격계 손상, 시간차가 있는 골절, 치유 단계가 다른 여러 부위의 골절, 복합 및 나선형 골절, 척추 손상(특히, 여러 군데의 골절), ▶ 영·유아의 긴뼈에서 나타나는 간단 골절, 회전상 골절, 견지 못하는 아이에게서 나타나 는 대퇴골절, 골막하·출혈의 방사선 사진, 골단 분리, 골막 변형, 골막 석회화 ▶ 간혈종, 간열상, 십이지장 천공, 궤양 등과 같은 복부손상 ▶ 폐 좌상, 기흉, 흉막 삼출과 같은 흉부손상
행동적 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올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협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

*출처 : 보건복지부 / 아동권리보장원

정서학대 (Emotional Abuse)/(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호)

내용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신체적 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 신체발달저하
행동적 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물건을 계속 밟고 있거나 물어뜯음 ▶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신경성 기질 장애(놀이장애) ▶ 정신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 ▶ 언어장애 ▶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 ▶ 실수에 대한 과잉 반응 ▶ 부모와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

*출처 : 보건복지부 / 아동권리보장원

성 학대(Sexual Abuse)/(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내용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인 성 학대 행위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구강추행, 성기추행, 항문추행, 기타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드라이성교 등) ▶ 성교를 하는 행위(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신체적 징후	신체적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령 전 아동의 성병감염 ▶ 임신 생식기의 증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 질에 생긴 상처나 굵힌 자국 ▶ 질의 홍진(紅疹) ▶ 배뇨곤란 ▶ 요도염 ▶ 생식기의 대상포진 	항문증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문 괄약근의 손상 ▶ 항문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 항문 내장이 짧아지거나 뒤집힘 ▶ 항문 입구에 생긴 열창 ▶ 항문이 좁아짐 ▶ 회음부의 동통과 가려움 ▶ 변비 ▶ 대변에 혈액이 나옴 구강증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천장의 손상 ▶ 인두(咽喉)염질(pharyngeal gonorrhoea)
	성적 행동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들 ▶ 타인과의 성적인 상호관계 ▶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 야뇨증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저조한 학업수행 	비(非)성적인 행동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축, 환상, 유아적 행동(퇴행행동) ▶ 자기 파괴적 또는 위험을 무릅쓴 모험적인 행동 ▶ 충동성, 산만함 및 주의집중장애 ▶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또는 외톨이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 방화/동물에게 잔혹함(주로 남아의 특징) ▶ 비행, 가출 ▶ 약물 및 알콜 남용 ▶ 자기 파괴적 행동(자살시도) ▶ 범죄행위 ▶ 우울, 불안, 사회관계의 단절 ▶ 수면장애 ▶ 유뇨증/유분증 ▶ 섭식장애(폭식증/거식증)
행동적 징후		

*출처 : 보건복지부 / 아동권리보장원

방임(Neglect)/(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내용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방임의 유형 예	물리적 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 ▶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교육적 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학교를 의미함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③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의료적 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시설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 비행 또는 도벽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함 ▶ 지속적인 피로 또는 불안정감 호소 ▶ 수업 중 조는 태도 ▶ 잦은 결석

*출처 : 보건복지부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발생요인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장애 ▶ 학대경험 ▶ 약물중독 ▶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 충동 ▶ 부모 역할에 대한 지식부족 등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 실업 ▶ 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 ▶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 가정폭력 ▶ 부모-자녀 간 애착부족 등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김 ▶ 체벌의 수용 ▶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 부재 및 미비 등

아동학대 신고

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p>※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p>
어떻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 국번없이 112 ▶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번호	체크항목	체크란	
1	사고로 보이기에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3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4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5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6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보인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7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8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9	성학대로 의심될 성 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0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1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2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혹은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3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집(보호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한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4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 중에 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을 조기발견하기 위해 활용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1개문항이상 “예”라고 체크된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로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 보호

신고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 아동권리보장원

대체교사지원사업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법을 소개합니다”

Ⅳ 사고사례중심 응급처치 및 보육 지도 방안

1 넘어짐

넘어짐 사고의 특징

영유아들은 보행능력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고 신체조절 능력, 균형 감각이 미숙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넘어짐은 어린이집 사고유형 중 30.8%를 차지하는 가장 높은 비율의 사고이다.

보육 지도방안

- ▶ 장난감을 가지고 논 뒤에 깨끗이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 바퀴가 굴러가며 넘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바퀴달린 장난감 사용 수칙을 반복적으로 지도한다.
 - 긴 옷자락에 걸려 넘어지거나 큰 신발 또는 신발 끈이 풀어져 밟고 넘어지는 일이 많으므로, 안전한 옷차림과 끈이 없는 신발을 착용할 수 있도록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 나들이나 현장학습과 같이 익숙하지 않은 길을 갈 때는 영유아가 주의할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고 보육교직원이 맨 앞과 맨 뒤에서 위험요인을 제거한다.
 - 영유아는 오랫동안 앉았다 일어나면 균형을 잃어 넘어지기 쉽다. 평소 자세 변화 시 조심히, 천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보육환경 관리법

- ▶ 어린이집 환경을 구성할 때에는 영유아 눈높이에서 시선과 움직임을 최대한 예견하여 문, 가구, 벽면, 기둥, 놀이기구 등의 모서리를 포함한 위험한 곳에 완충재를 부착하고 위험표시를 하여 생활환경을 점검하여야 한다.
- ▶ 화장실, 현관, 복도, 계단 등에는 난간 손잡이를 설치하며 보육실이나 복도 바닥에 물건이 놓여있지 않도록 수시로 정리한다.

*출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2 굶핍·베임

굶핍·베임 사고의 특징

굶핍·베임 사고는 영유아 부주의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이다. 따라서 굶핍과 베임 경험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등 생활습관지도 및 훈련과 교사의 각별한 교육 및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응급처치 방법

- ▶ 굶핍·베임 사고는 출혈, 찰과상, 창상, 열상 등의 외상을 가져오므로 즉각적이고 적합한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 ▶ 가벼운 상처의 경우에는 다친 부위를 식염수나 깨끗한 수돗물로 씻고, 물기를 깨끗한 거즈로 닦은 다음 상처에 흡습성 밴드를 부착 한다
※ 응급처치 시, 휴지나 기타 소독되지 않은 것으로 지혈하면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 상처의 깊이와 크기, 부위에 따라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육환경 관리법·보육지도 방안

- ▶ 놀잇감은 즐거운 매체임과 동시에 사용에 따라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평소에 알려 주어야 한다.
- ▶ 일과 전 후에 영유아가 사용하는 교재와 교구의 안전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유리나 도자기, 합성수지, PVC, 멜라민 재질 등의 교재교구는 쉽게 금이 가고 작은 충격에도 파손되는 위험이 있음)
- ▶ 영유아의 발달연령에 적합한 안전한 소재와 크기, 종류 등의 교재와 교구를 제공한다.

*출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3 할킴·꼬집음

할킴·꼬집음 사고의 특징

어린이집에서 할킴과 꼬집음 사고의 원인은 탐색과 자기방어가 주원인이다. 영유아가 어릴수록 언어적인 소통 및 표현이 부족하고 또래 관계 조절 능력이나 협상 기술이 미숙하므로 손으로 할퀴거나 꼬집는 등의 행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응급처치 방법

- ▶ 찰과상 정도는 습윤 밴드 부착으로 수일 내 회복이 가능하다.
- ▶ 살점이 패일 정도의 깊은 상처라면 피부과나 성형외과에 가서 치료받는 것이 좋다.
- ▶ 상처부위의 세포손상이 적을수록 식염수 또는 수돗물로 세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요오드 용액은 얼굴의 얼룩이 남고 쉬이 지워지지 않아 상처를 오히려 자세히 볼 수 없게 되고, 과산화수소는 소독 시 영유아가 참기 어려울 정도로 아플 수 있다.

보육환경 관리법·보육지도 방안

- ▶ 긍정적 사회적 교육과 더불어 분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 ▶ 영유아의 손톱 상태는 수시로 확인해 관리하도록 하여, 가정과 연계하여 긴 손톱은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 보육교직원의 액세서리 및 손톱도 주의하여 관리한다.

*출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4 당김

당김 사고의 특징

손목, 어깨 팔꿈치, 골반 등의 탈구가 일어났을 때에는 탈구가 된 부분이 부어오르고 그 부분을 움직이지 못하거나 움직이기 싫어하면서 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보육 지도방안

- ▶ 어깨 탈골의 경우에는 삼각건이나 팔걸이를 이용해서 팔을 고정합니다.
- ▶ 팔 탈골의 경우에는 다친 부위 위·아래 관절까지 부목을 단단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 ▶ 다리 탈골의 경우에는 살살 눕힌 후 부목으로 무릎과 발목 아래를 고정합니다.

보육환경 관리법

- ▶ 교사는 영유아에게 탈구가 일어날 위험성이 높음을 잘 인식하고 영유아들을 움직이게 할 때는 힘을 사용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교사가 무심코 팔을 잡아당기는 일이 없도록 하며 특히 영유아의 눈높이가 맞도록 낮추어 보육활동을 진행합니다.

*출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5 끼임

끼임 사고의 특징

끼임 사고는 보통 다친 순간보다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영유아가 통증을 느끼고 울게 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응급처치 방법

- ▶ 통증이 있을 경우 상처부위를 확인 후 움직여 보도록 하는데, 손가락은 손을 오므렸다 폄다를 시키고 팔이나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를 하며 살펴봅니다.
- ▶ 잘 움직이지 못하고 통증을 호소하면 골절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병원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 ▶ 많이 틀고 붓기가 생긴다면 수건으로 얼음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 출혈이 생겨 상처가 나면 소독 후 지혈을 하고, 상처의 깊이와 벌어진 정도에 따라 병원에 가서 봉합하거나 습윤 밴딩을 하여 치료합니다.

보육환경 관리법·보육지도 방안

- ▶ 끼임 사고의 경우에는 교사의 예방적 환경 관리가 가장 중요하므로 영유아의 손·발톱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틈새 공간은 모두 막아 두어야 합니다.
- ▶ 현관문은 천천히 닫히도록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며, 보육실문에는 손가락 끼임 방지 장치를 설치합니다.
- ▶ 문틀 아래에는 끼일 수 있는 공간이 없도록 관리하여 가구의 서랍이나 문에는 잠금장치를 합니다.
- ▶ 계단 난간에는 영유아의 몸이 끼이지 않도록 기준에 맞추어 설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아울러 영유아가 대집단으로 이동할 때에는 문 쪽에 교사가 서서, 영유아의 안전한 이동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출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6 미끄러짐

미끄러짐 사고의 특징

미끄러짐으로 인한 사고는 앞·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신체 일부가 세게 부딪히기 때문에 상해가 생깁니다. 주로 주변 사물에 부딪히며 열상, 창상, 등이 생기거나 멍이 들고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 방법

- ▶ 출혈이 있는 화상은 상처를 깨끗이 식염수로 씻고, 거즈로 눌러주어 지혈한 후 병원에서 치료합니다.
- ▶ 출혈이 난 상처 치료에 집중하다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골절을 확인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영유아가 통증을 호소하는 부분이나 움직임이 불편해 보이는 부분 등을 확인하여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육환경 관리법

- ▶ 현관 앞은 비가 오는 날 우산이나 신발의 물기 등으로 바닥이 매우 미끄러워질 수 있으므로 마른 걸레로 수시로 닦아야 합니다.
- ▶ 화장실, 세면대등도 건조하게 유지하여 물기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며 영유아들이 밟고 미끄러질 만한 물건들이 없도록 정리하여야 합니다.
- ▶ 겨울철에는 노면이 매우 미끄러움으로 바깥놀이 대신 산책을 하거나 실내 활동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양지로 이용하여 걷도록 합니다.

*출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7 물림(사람)

물림(사람) 사고의 특징

어린이집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안전사고 중에 하나가 또래들에게 물리는 경우입니다. 영유아들은 상호의사 소통이 언어보다 행동, 몸짓으로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대개 놀이하다가 순간적으로 분노하여 친구의 얼굴이나 팔과 등을 치아로 힘을 주어 물게 됩니다. 물린 상처에 치아 자국이 선명히 나거나 멍이 들고, 심하면 피가 나고 살이 패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정서 없이 무의식중에 상대방을 탐색하다가 물기도 하고, 자기 치아에 혀와 입술을 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들의 이는 새로 나고 있기 때문에 마모가 덜되어 매우 뾰족하여 깊이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 방법

- ▶ 사람의 입속에는 많은 세균이 살고 있기 때문에 상처가 깊이 났을 경우 바로 세척하고 소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상처가 심하지 않더라도 세척과 소독은 반드시 필요하며, 상처가 깊고 벌어진 정도가 심하면 병원에 가서 봉합하고 항생제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멍이 들어 통증을 호소할 시에는 냉찜질을 해주고, 흉이 남지 않도록 조기에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좋습니다.

보육환경 관리법·보육지도 방안

- ▶ 어린이집에서 개인 공간 없이 오랫동안 집단 활동을 하면 영유아들이 과도하게 자극을 받아 쉽게 피로하여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가급적 또래와의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같은 장난감 등의 교구를 넉넉히 구비하고, 갈등이 생길 때 조속히 다른 대체물로 주의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정적인 활동과 동적인 활동, 개인적인 놀이와 집단 놀이 등 활동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일과를 구성하고, 영유아의 욕구가 좌절되어 분노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 기질적 특성, 흥미와 호기심 등을 고려하여 상호작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Ⅳ 사고사례중심 응급처치 및 보육 지도 방안

8 이물질 삼킴(삽입)

이물질 삼킴(삽입) 사고의 특징

영유아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코, 귀, 입 속에 이물질을 스스로 넣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물건을 탐색하며 코로 냄새를 맡다가 콧구멍으로 넣어보기도 하고 입에 넣어 물어보거나 삼키기도 합니다. 특히 영유아가 혼자 무엇인가를 몰두해 있을 때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니 상황을 잘 관찰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응급처치 방법

- ▶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눈꺼풀을 벌려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물을 흘려 씻어 내도록 합니다. 병원으로 이송할 때는 깨끗한 손수건 등으로 띠를 만든 후 눈을 가려 눈을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한 뒤 이동합니다.
- ▶ 코와 귀 등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제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이물질을 삼키거나 빨아먹은 경우 겉으로는 증상이 없어도 식도, 위 손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억지로 토하게 하지 말고 입과 얼굴을 헹구고 즉시 응급실을 방문하도록 합니다.

보육환경 관리법

- ▶ 코, 귀, 입에 들어갈 만한 작은 크기의 물건이나 놀잇감(직경3.5cm 이하)은 영아(만0세~1세)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별도로 보관하도록 합니다.
- ▶ 영유아(만2세~5세) 보육활동 시 세제, 화장품 등의 화학제품이나 3.5cm 이하 물건, 놀잇감을 사용하게 될 경우 삼키거나 코, 귀 등에 넣지 않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출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대체교사지원사업



“대체교사 현장 업무 이야기”

하나

매번 파견하는 첫 날에는 새로운 마음가짐과 긴장감을 갖는다.

처음 파견되는 어린이집도 그렇지만 여러 번 파견되었던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다.

각 어린이집과 배치된 반의 분위기, 영유아의 특성이 다르기에 늘 긴장감을 유지하게 된다.

1일에서 10일까지의 파견 기간 동안에 영유아들과의 하루일과 진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기에 더욱 그러한 것 같다.

그와 더불어 담임교사의 공백을 잘 채워주어 어린이집에 최대한 도움이 되고, 영유아도 안정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다보면 책임감은 늘 따라오게 된다.

어린이집의 상황에 따라서 교직원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서로 돕고, 영유아의 개별 특성을 먼저

파악해서 상호작용하고 보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근무하다보면 나름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해 아쉬움도 생기지만, 그 기간 동안 나름대로의

즐거움과 작은 성취감도 느낀다.

가끔 퇴근하고 난 후에도 영유아의 밝은 모습과 몸짓이 떠올라 미소 짓게 된다. 간혹 나를 힘들게

하는 고된 하루가 있기도 하지만, 나를 깨어있게 하는 생활 동력이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때론 소외되는 느낌에 외로울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다정하고 편안하게 대해주어

즐겁게 지낼 수 있다.

파견 마지막 날 어린이집을 나서면서 한 주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흐뭇하기도 하다.

특히 교직원으로부터 “한 주 동안 고생했고 감사하다”는 말은 더욱 위안이 된다.

앞으로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영유아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보려 한다.

둘

오롯이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것. (편견 없이 아이를 볼 수 있는 것)

각종 문서에서 자유로운 것

부모님과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것

단점 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으로 배려 받는 것이 있다는 것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체계가 다른 곳에서 맞추고 적응해야 한다는 것

항상 긴장하며 언행을 조심하고 눈치를 보며 살피야 한다는 것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출처: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셋

부모님들과 대면하는 일이 없고 백지상태에서 유아들과 만나니 유아들이 예뻐니다.

휴가를 맘 편히 보낼 수 있어서 좋으며 한곳에 있지 않아서 지루함도 덜 합니다

매주 다른 어린이집에 가야해서 이들은 저 나름대로 적응을 해야 하고 긴장도

많이 되며 책임감도 커집니다.

넷

다양한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활동 등을 경험 할 수 있어 배움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

매번 새로운 곳에 가서 적응해야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며

아이들, 선생님들과 정들자마자 헤어져야하는 아쉬움이 있다

다섯

휴가계획을 자유롭게 잡을 수 있어 좋아요

서류에 대한 부담이 없어 좋아요

늘 감수하는 일이지만, 유난히 눈치를 봐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체교사를 보조교사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 심기가 불편할 때 가 있어요

*출처: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여섯

어린이집 교직원으로 일을 할 때 우물 안 개구리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대체교사를 하며 다양한 어린이집을 경험하며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철학, 목표, 교수방법을 접해볼 수 있어 좋은 점은 배우고, 때로는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반성을 할 수 기회가 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배치 받는 원에서 나의 모습을 보며 교직원들이 반성적 사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이야기 해 주실 때 대체교사로의 보람도 있다.

서류적인 부담이 적기 때문에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많이 주어지고, 오로지 영유아에게 집중할 수 있어 교사로서의 상호작용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직접적으로 부모와의 만남이 있는 것이 아니여서 부모상담 및 부모응대에 대한 부담과 어려움은 덜하였고, 며칠에서 1주간의 짧은 시간이다 보니 모든 것이 좋게만 보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었다. 정해진 휴가가 아닌 일정에 맞추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자녀들과의 시간, 여행 등을 계획 가능하였고, 부모로서 많은 시간을 못해 준 것에 대한 보상의 시간이 가능하였다.

대체교사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외부에서 파견되어 오는 인력이기에 경계하고, 낯설어 하는 경우도 많고, 배려를 해 주시지만 어색하고 편하지 않아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다. 배려를 해주어 휴게시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도 아무래도 낯선 곳이고 교사와 원장님과 함께 있는 곳이면 휴게시간을 갖기 어려운 점도 있다. 시설의 모르는 것이 많은데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 알려주지 않아 여러번 여쭙어 보는 경우가 있는데 당황해 하시지만 다시 안내 해주셨다. 주 또는 며칠간격으로 이동되어 매번 적응하고 긴장을 하게 되는 대체교사의 특성상 아동의 성향 파악이 정확하게 관찰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아동관찰을 요구하거나 키즈노트 작성을 하게 되면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다. 며칠간의 생활에서 영유아와 익숙해져 성향파악이 되었을 때 헤어져야 하는 것이 아쉽고, 다시 만날 때 영유아의 이름을 불러 주고 싶지만 생각이 나지 않아 이름을 불러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미안하기도 했다.

일곱

행사 계획과 준비 진행을 하지 않아도 돼서 좋아요
평가인증 준비 시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아 좋아요
경력에 인정이 되나 호봉 인정이 되지 않음

*출처: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여덟

영아와 유아 모두 보육할 수 있어 좋음
다양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인성과 자질을
갖춘 교사를 만날 수 있어서 좋았고 내가 그런
보육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할 수 있게 함
아동학대에 대한 분간이 안 될 때에
신고의무자로서의 결정이 어려움
어린이집마다 시스템이 달라 하루
이틀 적응해야 하는 것

아홉

여러 원을 다녔을 수 있는 점
어린이집 서류 적음
다양한 영유아를 접할 수 있음
어린이집 마다 다양한 음식 맛을 볼 수 있음
낮가림하는 영아
적응할 때 쯤 다른 원으로 이동하고
정교사 지원 임에도 보조교사 같은 생각이
들 때 섭섭함

열

짧게는 하루 길게는 열흘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보육교사 업무 공백을 그대로 진행함과 다양한 연령, 다양한 어린이집 유형의 어린이집으로 이동해야하고 오늘은 0세 내일은 5세반 영유아 친구들과 함께 해야 하는 어려움이 대체교사의 장점이며 단점이다. 담임교사보다 더 능숙하게 업무를 진행하는 것도 더 처지게 업무를 진행하는 것도 현장에서는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각기 다른 어린이집 분위기를 빨리 파악하고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동을 하는 업무이다 보니 오해를 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함으로 비밀유지는 필수이다. 새롭게 만나는 영유아의 이름을 빨리 외우고 불러주는 스킬이 필요하다. 대체교사는 특히 안전에 유의 하는 게 무엇보다 최우선이다.

안전사고 발생 시 담임교사가 느끼는 강도보다 대체교사는 매우 크다. 휴게시간 사용 시 어린이집 공간사용이나 외부 이용 시 주변 시설 이용이 다소 불편함이 발생한다. 그러나 사용하고 싶은 기간에 연가 사용이 담임교사 보다 수월하다. 진심은 영유아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된다. 영유아들을 통해 기분 좋은 에너지를 받을 때도 많고 낮가림이 심해 대체교사 근처에도 오지 않는 영아가 있어 어려움도 있고 표현을 잘하는 적극적인 친구는 그림이나 종이를 접어 대체교사에게 주며 다음에도 우리 어린이집에 꼭 오라고 말하던 친구와의 즐거웠던 기억이 난다. 근무 마지막 날 서류(일지)와 주변정리 등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퇴근하며 서로의 고마움을 나누고 기쁘게 헤어질 때 행복감을 느낀다. 장기근무가 체질에 안 맞고 늘 새로운 환경을 즐기고 다양한 연령의 영·유아와 함께 놀이하고 싶다면 대체교사를 적극 추천한다.

*출처: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출처

- 육아종합지원센터 소개 / 출처: 2020년 보육사업 안내
- 대체교사지원사업 / 출처: 2020년 보육사업 안내
- 대체교사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 출처: 업무관리시스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대체교사 교육안내 / 출처: 업무관리시스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아동 중심 · 아동권리 실현으로 아동이 행복한 나라 / 출처: 보건복지부 / 아동권리보장원
- 사고사례중심 응급처치 및 보육 지도방안 / 출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 대체교사 현장 업무 이야기 / 출처: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대체교사go, 어린이집지원
대체교사지원사업
보육교사gogogo.

인 쇄 2020년 10월

발 행 2020년 10월

발행인 정혜원

발행처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3층
T. 031-876-5767

인쇄처 하늘디자인

※ 본 자료집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